국제관계위원회규정

제정 2004.11.26.
개정 2020. 9.24.

제1장 명 칭

제1조 본 규정은 대한골프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국제관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20. 9.24.>

제2장 목 적

제2조 위원회는 협회사업의 국제관계업무를 지도.감독하며, 국제기구와 각국골프협회/연맹과의 교류와 친선에 힘써, 한국골프의 국제적인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장 구 성

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24.>

제4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, 간사 1명은 회장이 협회 상근부회장 또는 처장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20. 9.24.>

제5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 처리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.

제4장 회 의

제6조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 ①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5장 업 무

제8조 위원회는 제2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행한다.

1. 국제기구인 IGF(International Golf Federation) 및 A-PGC(Asia-Pacific Golf Confederation) 관련업무
2. R&A, USGA 및 각국골프협회와의 교류업무
3. 기타 국제 관계 업무

제9조 전 조 사업을 수행키 위한 세칙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제6장 부 칙

제10조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 본 규정은 서기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9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